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

제출년월일 : 2001. 3. 2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0. 2. 9) 및 동법시행규칙(2000. 5. 4)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음식점·숙박시설"을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명칭변경

나. 위락·숙박시설의 정의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

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상수원취수지점 상류 제한 완화

- 유하거리 4㎞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지역 ⇒ 1㎞이내의 하천 양안 100m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지역

라. 하천 : 지방2급 하천 - 숙박시설 거리제한 동일 40m⇒40m
- 위락시설 거리제한 완화 40m⇒30m

마. 도로 - 위락시설 거리제한 완화 10m⇒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단,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관련 별표의 제1호 지역은 제외)

바. 천연기념물 제한 신설 ⇒ 주변으로부터 100m 이상지역

사. 지역유형문화재, 지방기념물, 문화자료, 기타문화유산 제한신설
⇒ 주변으로 부터 50m 이상지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음식점·숙박시설"을 "위락·숙박시설등의"로 한다

제1조중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 등"이라한다)"를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같이,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허용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평창군의 조례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 제5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 및 제7조의 제목과 본문 중 "숙박업등"을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시설은 다음 각호"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에 저촉되지 않고 다음 각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경계(제외지 비탈 상단 법선 기준, 자연제방을 포함한다)로부터 숙박시설은 40m이상 위락시설은 30m이상의 지역. 다만, 하천과 위락·숙박시설 대상지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위락시설에 한하여 동항 제4호를 적용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수도시설의 상수원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 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4. 도로법 제50조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위락시설에 한함)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주점영업의 경우는 10m 이상 지역

제3조제1항제5호중 "건축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를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제7호내지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7호로, 제10호를 제8호로, 제11호를 제9호로, 제12호를 제10호로, 제13호를 제11호로, 제6호중(종전의 제10호)"제8조"를 "제9조의3"으로, 제9호중(종전의 제11호) "사적지" 다음에 "천연기념물"을 추가하고 제10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유형문화재·지방기념물·문화재자료·기타문화유산으로 판단되는 자원의 주변으로부터 50m이상인 지역
11.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중 "숙박업소등의 건축외벽선"을 "위락·숙박시설 등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외벽선"으로 한다.

평창군조례 제1576호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중 "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등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를 "건축허가를 신청한 위락·숙박시설등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	평창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이하"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위락·숙박시설 등.....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허용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평창군의 조례가 허용하는 지역을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삭 제 >
4.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를 군수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삭 제 >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허용지역 등) ①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허용지역등) ① ..... 위락·숙박시설등의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4에 저촉되지 않고 다음각호..... .....

현 행	개 정 안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준용하천으로부터 양안 40m이상의 지역 가. 하천개수완료구간 : 제외지 비탈상단 법선 나. 미개수구간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지 비탈 상단법선	1.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제외지 비탈 상단 법선 기준,자연제방을 포함한다)로부터 숙박시설은 40m이상, 위락시설은 30m이상의 지역. 다만, 하천과 위락·숙박시설 대상지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위락시설에 한하여 동항 제 4호를 적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같은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km이내 집수구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3.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수도시설의 상수원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 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4. 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철도변지역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50m 국도·지방도·군도 경계선으로 부터 30m이상 지역.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국도·지방도·군도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지역	4. 도로법 제50조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위락시설에 한함)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주점영업의 경우는 10m 이상 지역

현 행	개 정 안
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준용하천과 숙박업등의 설치예정지 중간에 가목 규정에 의한 도로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삭 제 >
5. 건축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평창군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한다.	5.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4항.....
6. (생 략)	6. (현행과같음)
7. 영농을 목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서 보전 가치가 적거나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삭 제 >
8.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 200 m이상 지역	< 삭 제 >
9. (생 략)	7. (현행과 같음)
10.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이외의 지역	8. .....제9조의3.....
11. 국가·지방지정 문화재 및 명승지·사적지 주변으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9. .....사적지·천연기념물 .....
12 ~ 13 (생 략)	10. 지방 유형문화재·지방기념물·문화재자료, 기타문화유산으로 판단되는 자원의 주변으로부터 50m이상인 지역

현 행	개 정 안
	11.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업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1. 군수 또는 농·수·축·임협장이 설치 및 지정하는 농수축산물 직판장내 음식점 2.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아 설치하는 도로변 휴게소내 음식점	< 삭 제 >
제4조(시설물 판단 적용기준) 제3조제1항의 허용지역 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담당부서에서 판단 적용한다. 또한 기준시설물에서 적용하는 거리는 숙박업소등의 건축외벽선까지 거리로 한다.	제4조(시설물 판단 적용기준)..... .... 위락·숙박시설 등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외벽선.....
제5조(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주변경관, 미풍양속 및 주변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특례)..... ....위락·숙박시설등..... ....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토지의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위락·숙박시설등..... ....
제7조(숙박업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의 통합처리) 숙박업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은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한다.	제7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위락·숙박시설등의..... ....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생략)	①(시행일) (종전과 같음)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등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 건축허가를 신청한 위락·숙박시설등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교통부령 제23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 영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준농림지역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위락·숙박시설 등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위락·숙박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 하천법

第2條 (用語의 定義등)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②河川은 이를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1. 國家河川 : 國土保全상 또는 國民經濟상 중요한 河川으로서 國家가 관리하는 河川
2. 地方1級河川 : 地方의 公共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河川으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관리하는 河川
3. 地方2級河川 : 國家河川 또는 地方1級河川에 流入하거나 이에서 分岐되는 水流로서 國家河川 또는 地方1級河川에 준하여 市·道知事가 관리하는 河川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관련

제 4 조의3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영 제14조제 1 항제 4 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0·5·4〕

〔별표 4〕〈신설 2000·5·4〉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지역(제 4 조의3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 1 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 1 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 1 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 1 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도로법 제50조

第50條 (接道區域의 지정등) ①管理廳은道路의構造에對한損潰, 美觀의保存또는交通에對한危險을防止하기爲하여道路境界線으로부터20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定하는바에依하여接道區域으로指定할수있다. 〈改正 66·8·3, 68·12·21〉

②管理廳은第1項의規定에依하여接道區域을指定하였을때에는遲滯없이이를 告示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94〉

③削除 〈99·2·8 法5894〉

④接道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8·12·21, 99·2·8 法5894〉

1.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
2. 建築物 기타의 工作物을 新築·改築 또는 增築하는 행위
3. 削除 〈99·2·8 法5894〉

⑤削除 〈99·2·8 法5894〉

⑥道路의 管理廳은 土地·竹木·施設이나 建築物 기타 工作物(이하 "施設등"이라 한다)의 道路의 構造나 交通의 安全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施設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94〉

1. 施設등이 視野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施設등의 붕괴로 인하여 道路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防止施設을 할 것
3. 道路에 土砂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土砂등을 제거하거나 防止施設을 할 것
4. 施設등으로 인하여 道路排水施設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防止施設을 할 것

〔별표 1〕〈개정 2000·6·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 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0. 업무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우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전화(033)330-2492/전송(033)330-2595
처리부서 건설과(본청1층) 과장 박현창 건설행정담당 김남국 실무자 김남호

문서번호 건설 58710 - 2227
시행일자 2000. 11. 11.

받음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3 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10/30 2000.8	
부군수			
과 장	전 결		
		담당주사 김남국	협조
담당자	김 남		
심사자		심사일	

제목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건설 58710-2787(2000. 10. 17)호와관련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결과를 다음과같이 보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0. 10. 17~2000. 11. 6(21일간)
2.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읍면게시판
3. 공고내용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고결과 : 의견없음

붙임 : 읍.면 공고결과 1부. 끝.

평 창 군 수